

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301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제안이유

-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시민시장 사용료 분할 납부 시 이자율 적용기준 개정
-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조항 정비

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라 종전 시민시장 사용료를 분할 납부 시 6%의 이자율을 적용하였으나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(안 제7조제3항)
- 나. 시민시장 사용자에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을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제1항,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험에 가입하고 사용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4조제1항, 제2항)

개정조례안 : 붙임1

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2

관계법령발췌서 : 붙임3

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사항 없음

예산수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사전예고(결과) : 의견1(반영1)

- 입법예고 : 2017. 5. 2. ~ 2017. 5. 23. (21일간)

기타 참고사항

- 현행조례 : 붙임4
- 방침결정문 : 붙임5

입법예고 의견 및 검토결과

제출자	검토의견	검토결과	반영 여부	비 고
행정자치부 (자치제도과)	○「민법」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·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·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, 한정치산을 인용하고 있거나 피성년후견인 등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자치법규의 정비 필요	○ 제3조제1호 개정 1. <u>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</u> ○ 부칙 제2조 신설 <u>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</u> 제3조제1호의 <u>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</u> 에는 <u>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</u>	반영	○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기획정비 과제 (경기도 법무담당과-6215 (2017. 4. 6.))

< 붙임 1 >

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안산시 시민시장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안산시시민시장(이하 "시민시장"이라 한다)”을 “안산시시민시장”이라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시민시장”을 “안산시시민시장(이하 "시민시장"이라 한다)”이라 한다.

제3조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3호 중 “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6조 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1.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

제4조제1항 중 “시장”을 “안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6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1항의 규정에 따라”를 “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35조에 의하여”를 “제33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4항 중 “시설물사용료”를 “사용료”로 한다.

③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 7항에 따른다.

제8조 중 “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”를 “제80조를 준용한다.”로 한다.

제9조제3항 중 “제83조에 의하여”를 “제8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제1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전항의 경우에”를 “제1항의 경우에”로 한다.

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4조(보험계약) 시장은 시민시장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제3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.

소관 실·과		지역경제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지역경제과장 정 규 상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소상공인팀장 이 종 규
	담당자 성명·전화	신 승 욱 (행정 2843)

< 붙임 2 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안산시시민시장(이하 "시민시장"이라 한다)</u>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<u>안산시시민시장</u> ----- ----- -----</p>
<p>제2조(정의) (생략) 1. "시설물"이라 함은 <u>시민시장의 건축물을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구획·구분된 점포(길이 4m × 너비 2.8m × 높이 3.9m)</u>를 말한다. 2. ~ 3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(현행과 같음) 1. ----- <u>안산시시민시장(이하 "시민시장" 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2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조(사용인의 자격)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인이 될 수 없다. 1. <u>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</u> 2. (생략) 3. <u>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</u></p>	<p>제3조(사용인의 자격) -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 1. <u>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</u>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제6조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</p>
<p>제4조(사용허가) 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<u>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</u> ② 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</u>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치, 규모, 사용료, 사용료의 자격등을 공고하고, 이에 따라 신청한 자 중 에서 공개추첨에 의하여 사용인을 정한다. ③ ~ ④ (생략)</p>	<p>제4조(사용허가) ① ----- --- <u>안산시시장(이하 "시장" 이라 한다)</u>--- ② 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③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6조(사용허가 취소등) ① 시장은 사용인이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② 시장은 <u>제1항의 규정에 따라</u>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에는 「행정절차법」의 규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 ③ (생략)</p>	<p>제6조(사용허가 취소등) ① ----- 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1. ~ 4. (현행과 같음) ② --- <u>제1항에 따라</u> ----- ----- ----- ③ (현행과 같음)</p>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7조(사용료) ① (생략)	② 사용인은 사용료를 「안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 제35조에 의하여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일시불로 납부하여야 한다.	제7조(사용료) ① (현행과 같음)	② ----- ----- 제33조에 따라 ----- ----- ---	
③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5항에 의하여 연 6% 이자를 붙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.	④ 시설물사용료는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시설물의 반환일까지 계산한다.	③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는 경우에는 「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14조제7항에 따른다.	④ 사용료----- -----	
⑤ ~ ⑥ (생략)		⑤ ~ ⑥ (현행과 같음)		
제8조(사용료의 연체요율) 사용료 등에 대한 연체요율은 안산시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		제8조(사용료의 연체요율)----- ----- ----- 제80조를 준용한다.		
제9조(시설물 변경) ① ~ ② (생략)	③ 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에 의하여 대집행할 수 있다.	제9조(시설물 변경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	③ 제2항의 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」 제83조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.	
제10조(원상복구 및 반환) ① (생략)	②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	제10조(원상복구 및 반환) ① (현행과 같음)	②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무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.	
제11조(사용장소 변경허가) ① (생략)	② 시장은 전항의 경우에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	제11조(사용장소 변경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	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에 시민시장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	
③ (생략)		③ (현행과 같음)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보험계약) ① <u>사용인은 「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」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시설물에 관하여 사용자기간을 보험기간으로 하고,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시장이 정한 기한내에 그 보험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 전체를 보험목적물로 하여 계약할 경우에는 시장이 보험계약 업무와 보험료액의 분담액 징수에 관하여 각 사용인을 대리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14조(보험계약) <u>시장은 시민시장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하며 시장이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인에게 부과할 수 있다.</u></p>